



APEC 기술사의 域內 상호인정에 대한 동향(I)

On the Status of APEC Professional Engineer Mutual Recognition(I)



許 嬪*
Huh, Ginn

* 화약류관리기술사, 미국기술사(토목), 한국기술사봉사단장,
FEISEAP(동남아태평양공학회연합) 부회장,
APEC. P. E. 한국심사등록위원회 한국수석 대표.

요즈음 Globalization이란 말이 자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Globalization의 말은 독립된 나라의 존재를 전제로 한 뜻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큰 뜻을 가지는 것이다.

1. 머리 말

요즈음 Globalization이란 말이 자주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局地的인 분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도 있지만 Globalization의 말은 독립된 나라의 존재를 전제로 한 뜻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큰 뜻을 가지는 것이다.

1948년 창립한 국제기관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물자의 국경선을 넘어서 이동하는 무역을 용이하게 하며 세계경제의 발전을 期하는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장해를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 이었다.

GATT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은 GATT와 비교하면 세 가지 항목이 다른 점이 있다.

첫째, GATT에서는 물질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에 국한한데 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Service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국제적 규정을 만든 것이다.

둘째, GATT는 국제적 Rule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율을 적용하게끔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WTO 협정에 위배되었을 때 제소하게 되며 분쟁처리 Panel에서 의논하게 된다. Panel 정보의 채택 대항처치의 승인은 모든 가입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부결되지 못한다. 즉, Negative Consensus 방식에 따라 승인되는 것이다. 이민과 미숙련 노동자들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이 제공하는 고도의 Service의 이동은 상당히 자유화 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가 WTO/GATS의 문제 전반을 맡고 있다. GATS는 모든 Service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요건, 자격심사에 대한 수속 Service 무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장해가 되지 않는 필요한 규율을 작성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WTO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작업부도 설치하고 있다. GATS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s)를 비롯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건축사 등 특정한 직업에 중사

할 때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의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WTO/GATS의 특정 직업의 일부로서 그간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상호 인정하는 기구를 발족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술사의 상호승인 동향

1) WTO/GATS와 지역간 2국 협정

WTO/GATS에서는 ① 직업인으로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 객관성, 투명성에 따라 직업인에게 면허부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② 각국이 직업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요건은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고 각국의 조직이 면허를 부여하는 자유재량에 위임한다. ③ 직업인의 면허를 상호인정코자 할 때는 면허부여조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까지는 없지만 상호 인정 협정체결에 前向的으로 처리해야한다. ④ 교육과정이 상호협정체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교육과정은 당연히 교육자나 면허를 부여하는 조직에서는 주목할 만한 유의사항이다.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원래 WTO/GATS의 일이지만 각국의 기술사의 자격요건이 다르고 상호 인정협정을 작성하는데 容易하지 않는 점 등 그 외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건축사 등 각국 정부에서 볼 때 보다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은 현재로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WTO/GATS 이외의 NGO에서도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APEC HRD에 자문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사 자격에 대해서 면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역사적 경위로 법정비를 행하기 전에 기술사회에다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주어 현재에도 정부기관

이 아닌 기술사회가 면허를 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영국계로서 동남아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이다. 그러나 정부간의 협정인 WTO/GATS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이외에 기술사가 中核 멤버가 되어 있는 동남아태평양공학회연합(FEISEAP ;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및 세계공학회연합(WFEO ;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술사의 상호인정, 협정문제가 논의되어 결과적으로 APEC 지역간의 정부간 협력의 기초가 된 것이다. 물자교역과 같이 기술사의 상호 인정협정으로 지역 경제권과 무역권내에서 체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내 협정과는 별도로 2국간 협정을 맺은 나라도 있다.

2) 북미(北美)협정

지역의 협정으로서 현존하는 북미자유협정(NAFTA ;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일부로서 1995년 5월 체결한 캐나다, 미국, 멕시코간의 기술사면허 상호인정 확인서(Mutual, Recognition Document and Recommendations to NAFTA Commission)이다. 이것은 1개국에서 면허를 받은 기술사의 면허는 협정내 다른 2개국에도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 협정은 연방정부의 협정이다. 기술사 자격시험의 실시와 면허는 주정부 권한으로 국내 주정부간의 상호인정은 하고 있으나 타국의 주정부 면허는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다만 멕시코 접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를 비롯한 몇 개 주(州)에 불과하다. 다만 상호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기술사 자격 취득 후 최소 12년의 Full Time 실무경험을 요하며 그 중 8년간은 독립된 실무경력을 말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NAFTA의 면허를 부여하는 요건으로 국적 및 장기 주재요건이 배제되어있는 점이다.

3) 구주(歐洲)의 동향

EURO 통일권을 창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옛날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구주 공동체 EC(European Commission)을 거쳐 Euro 연합 EU(European Union)이 창설되어 현재는 공통 통화 Euro 도입에 이르렀다. 구주제국에서는 기술사의 면허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상호인정이라기 보다는 통화의 Euro에 대응하는 공통자격을 만드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사려되어 Euro 공학회연합(FEANI :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Engineering Association)이 Euro 기술사 제도를 만들었다. 1970년 European Register of High Technical Profession을 만들고 이어 1992년 제도개정으로 지금의 Euro 기술사 FEANI(Register of European Engineers)제도이다. 이 자격을 충족하는 요건으로 ① 18세 연령을 표준종료연한으로 하는 중등교육 졸업 ② 그 후 3년간의 FEANI가 인정하는 대학 수료 ③ 같은 2년간이 FEANI가 인정하는 대학의 계속교육의 수료 또는 실무경험, 혹은 기술훈련의 종료 ④ 다시 2년간 실무경력이다. FEANI는 Euro 기술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EC 가입국에 강제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Euro처럼 제도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나라에서 FEANI 기술사 제도가 타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기술사 자격을 충족시키는 최저 안전이 Euro 기술사 면허의 자격보다 낮은 나라뿐이다.

따라서 직무에 실제 취업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Euro 기술사 면허의 FEANI 가입권내의 유효성 실태는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Chartered Engineer가 신청하면 자동적

으로 Euro 기술사의 면허가 나오나 Euro 기술사를 영국의 면허를 부여하는 영국평의회(The Engineering Council)에서 인정하느냐는 아직 미지수이다.

4)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동향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기술사 상호인정을 착실하게 추진하게된 것은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의 열성 때문이었다. 이 3개국은 모두가 정부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사의 면허는 영국 왕실로부터 부여된 현장에 기인한 공학연합회(Institution of Engineers) 혹은 기술사회(Institution of Engineers)가 부여하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기술사, 호주와 홍콩은 Institution of Engineers 이지만 기술사가 주도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연합체로서 FEISEAP 内の 교육, 훈련위원회, 기술사업무위원회가 APEC Engineer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80년초부터 가입하고 있으며 상설위원회는 비용문제로 보내지 못하고 위원으로서 현재 부회장을 필자가 맡고 있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의 3개국은 Anglo-Saxon계의 나라로서 美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세계공학회연합(WFEO)을 통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의 2개국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경제의 긴밀한 무역협정(Australia-New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을 1996년 체결하고 그 협정의 일부에 기술사의 상호인정 문제가 포함 되어있다.

호주공학회연합(Institution of Engineers Aust)은 기술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반이 약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멀지 않은 시일 내에 APEC Engineer의 2개국 또는 4개국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본다. 이

에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5) Anglo-Saxon계 국가들의 동향

기술사 자격의 표준적 요건은 공학부를 마치고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다. Anglo-Saxon계의 6개국(아이슬란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이 1989년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제 1步로서 자격요건의 하나인 공학부 졸업자격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가입국의 인정된 공학부의 졸업생을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간접적 목적이다. 즉 워싱턴협정이다. 여기 참고할 것은 그 나라에서 기술사를 인정하는 공학회연합(캐나다, 미국을 제외한 4개국)과 기술사 인정을 하는 단체가 인정하는 대학의 공학부를 평가하는 평가단체(캐나다, 미국)이다. 그후 남아프리카, 홍콩 등이 추가되어 8개국 협정이 되었다.

워싱턴협정에 가입한 8개국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홍콩에서 모였다. 이 모임에는 FEANI가 초대되었으며 기술사 상호인정을 구주제국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홍콩에서의 의논된 결과 ① 학부졸업시의 학업의 동등성을 논의하는 것은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이 못된다. ② 기술사의 기량이 동등한 것이 중요하다. 이상 두 가지 점에서는 다같이 동의했다.

워싱턴협정을 체결해 놓고 “학부졸업시의 학업 동등성을 의논하는 것은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해서 건설적인 공헌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Anglo-Saxon系 나라의 교육시스템과 다른 교육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 歐洲大陸들의 나라들과의 상호인정을 맺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의 기량의 등가성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등가성의 객관적 평가는 곤란함으로 현재로서는 여러 나라의 기술사 제도를

존중하되 다음 기술사 면허를 취득 후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진 기술사를 상호인정의 대상으로 하자는 건설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를 Full Professional Level의 기술사라고 호칭하며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호인정 시스템의 조기확립을 위해서 1997년 샌디에이고에서 8개국 대표들이 다시 만났다. 기술사의 표준적 자격요건으로서 ① 워싱턴협정의 내용에서 인정된 교육 또는 동등의 질이 보증된 교육을 받을 것 ② 실무훈련을 쌓을 것 ③ 적절한 연대에 적정기간의 만족할 만한 실무경험을 쌓을 것, 이상 세 가지 요건이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요건은 홍콩의 동등한 내용보다는 약간 후퇴했지만 상호인정의 곤란시 되는 점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인정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견해에 따라 Full Professional Level을 NAFTA의 상호인정과 같은 실무경험으로 대치하자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입국의 통상업무에 대한 기술문서를 이해하고 그 외 일상업무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무에 종사하는 나라의 기술기준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도 상호인정의 요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 대응안은 제안된 바 없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해서 Consultant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기업 내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기술사 그리고 합병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사간에는 언어의 요구 및 기준의 이해도에 대해서 필요성은 크게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지적된다.

공학교육 수준의 동등성과 기술사의 상호인정과는 별개문제라고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논할 만한 테마이다.



6) APEC Engineer Project의 동향

호주공학회연합은 영국계의 나라들 뿐 아니라 아세아의 여러 나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은 법률에 따라 면허를 주는 나라로서 아세아태평양연합만이 검토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 호주정부와 일체가 되어 정부간 협의로서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정부간 협의장으로서 호주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응 경제 Group으로서 말레이시아의 Mahatil 수상이 제창한 아세아경제회의가 실현되지 못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검토키로 하고 APEC의 인재양성 개발부(HRD : Human Resources Development)에서 호주 정부의 재원으로 호주공학회연합이 주도가 되어 기술사 상호인정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1996년 5월 시드니에서 APE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가, 1997년 3월 발리 섬에서 제1회 작업위원회가, 1997년 6월 멜보른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의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후 1997년 8월 마닐라에서 워크숍을 연 다음 11월에는 제3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말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 APEC 가입국에 송부 하게 된 것이다. APEC HRD의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입국이 동의하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동의한 나라끼리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해서 ① 기술사는 학부졸업수준으로 타인의 감독 밑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람 (Graduat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 ② 최소한의 감독 밑에서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경험을 가진 기술사 (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 ③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고도의 기술적, 혹은 직무의 Management 책임을 가진 기술사(Executiv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 등 세 가지를 필요요건으로 하고있다. ②의 경험을 가진 기술사의 수준이란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①의 수준에서 4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독립해서 기술사업을 할 수 있는 30세 정도의 경력을 뜻하는 것이다.

학부졸업수준은 나라의 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데 반하여 경험을 쌓은 기술사는 학부수준졸업후의 직업인으로서의 훈련 및 경험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의 발전에서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함으로 상호인정이 대상으로서 이 경험을 쌓은 기술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되어있다.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 상호인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사의 수준은 워싱턴협정에 가입국이 샌디에이고 회합에서 제안하고 있다. 학부졸업 수준으로부터 최저 12년간의 Full Times 실무경험을 쌓은 기술사 수준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있다. 그 외 학부졸업 수준의 기술사에 대해서는 교육이 질과 자격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는 보증이 필요하고 있다.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는 수입국이 언어의 문제 및 기술사 수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 없으나 8월의 마닐라 회의에서 의논시 출발점인 안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워싱턴협정 가입국의 샌디에이고 회합에서의 제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다. 멜보른의 운영위원회에서는 경험을 쌓은 기술사의 상호인정된 기술사를 APEC Engineer로 칭하고 있다. 이는 Euro Engineer(유로 기술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1980년 발표된 동남아태평양공학회연합(FEISEAP)은 회기 2년마다 가입국을 순회하면

서 총회를 개최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연2회 정도로 열리게 된다. 이 기구는 NGO로서 각국 대표가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로 되어 있음으로 주된 의논은 기술사업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와 공학교육 및 훈련위원회(Engineering Education and Training Committee)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 대표가 참가하게 된 것은 1994년 제3회 총회 때이다. 당시 가입단체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시 이사인 필자가 처음 선을 보게된 것이다. 국내 사정으로는 원래 정부보조금이 없어 과기총 자체에서도 자비로 가는 것도 잘된 것으로 생각할 때이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 나가서 여러 대표들을 만나보니 아세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는 부자나라에서 왔다고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공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다고 위안도 해주며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데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호주 대표가 기술사의 상호인정건에 대한 초안을 가져와서 각국 대표들의 실정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다.

1986년에는 제4회 총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당시 창원에 있는 한국중공업(주)(대표 성낙정)이 과기총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준비위원장 성낙정, 부회장인 필자가 3박 4일간의 회의를 돈 한푼들이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명실공히 그들이 말하는 부자 나라의 명목을 갖추게 되어 일생일대의 큰 기쁨을 안게 되었다. 그후 1980년 후반기까지는 매년 참가했으나 90년대 들어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직을 겸하게 되다보니 바쁜 일정에 과기총 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등한히 하게 되어 1996년에 이르자 비로소 FEISEAP 회의를 우리 나라로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과기총 명의로 되어 있는 FEISEAP 정회원권을 한국기술

사회로 변경하고 이에 정식인가를 받기 위해 1996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9회 FEISEAP 총회에 참석하여 명의변경 동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APEC Engineer건은 우리 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총회 분과위원회 할 것 없이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1998년 3월 제10회 총회에서 필자가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오는 2000년 제11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면 우리 나라에 총회를 다시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

FEISEAP이 NGO인데 반하여 1996년 5월 시드니에서 APEC HRD가 GO로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APEC Engineer Project를 연2회 이상 회합을 거듭하며 기술상호인정안이 만들어져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1999년 6월까지 시드니에 각 가입국은 APEC Engineer 심사등록위원회(Monitoring Committee)안을 제출토록 되어있다. FEISEAP 회의와는 APEC Engineer Project에 관한 한 APEC HRD에서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교육부에도 한국대표를 파견토록 권유한 바, 피일차일 미루다가 1998년 11월 처음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대표를 보낸 바 있다. APEC Engineer 심사등록위원회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이니 일본, 호주 등과 같이 우리 기술사회가 대행하도록 건의했으나 노동부의 입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맡기로 하여 현재 작업중이다. 1998년 12월 교육부 주최로 노동부, 과학기술부, 기술사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토목협회 등 관민합동회의를 필자가 주도 끝에 합의하기를 APEC 심사등록위원회는 기술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의까지 유도했으나 과기부의 무관심으로 노동부가 맡게 된 것이다.

(원고 접수일 1999. 6. 9)